

다음 문서는 보호관리인의 일반적인 권한과 의무를 설명하는 알래스카 법령 (AS) 13.26.316 입니다. 그 내용은 영어가 제 2 언어인 후견인들이 법원 명령에서의 권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권한들이 법원 명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의 끝에 후견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AS 13.26.316 후견인의 일반적인 권한과 의무

(a) 후견인은 근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법원이 지정한 특정 의무 및 권한을 수행해야 합니다. 의무와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피후견인이 자기 능력의 최대한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피후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피후견인 스스로 행동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신체적 건강이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을 최대한 개발하거나 회복하고,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후견인의 재정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b) 무능력자의 부분적 후견인은 법원 명령에 열거된 피후견인 관련 권한과 의무만 갖습니다.

(c) 무능력자의 완전한 후견인은 부모가 미혼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권한과 의무와 동일하게 피후견인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다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살핌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고, 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행위로 인해 해를 입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명령에 의해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한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양육권을 가지며, 피후견인의 신체 건강 및 안전을 위한 필수 요건에 부합하는 가장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거주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2) 보호자는 피후견인의 보살핌, 안락 및 양육을 보장해야 한다;

(3)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체 건강 및 안전을 위한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고, 신체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피후견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거나 회복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4)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인격권, 시민권, 및 인권을 피후견인이 누리도록 법원의 조치 및 기타 수단을 통해 보장해야 합니다;

(5) 후견인은 본 절의 (e)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후견인이 의료 또는 기타 전문 케어, 상담, 치료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동의 또는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6) 후견인은 이 장에 따라 보호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후견인은 후견인으로서의 서비스나 후견인 또는 후견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피후견인에게 제공한 방이나 식사에 피후견인의 돈이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지불하기 전에 피후견인이 재정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발견하고 그 청구 금액이 합당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능하면 피후견인의 친척 중 최소한 한 명에게 지불승인요청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필요를 위해 여분의 돈이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 피후견인의 재산 보호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후견인은 후견인이 받은 피후견인의 재산 전부를 AS 13.26.401 - 13.26.575 에 명시된 대로 보호관리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d) 보호관리인이 임명된 피후견인의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며, 후견인과 보호관리인 사이에 합의한 대로 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액수와 피후견인에 제공되는 방 및 식사에 대한 합당한 액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살핌 및 양육을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쓰도록 보호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후견인은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1) 피후견인이 별도의 소송을 위한 후견인을 가지고 있는 AS 47.30 에 의거한 공식적인 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신 질환자를 위한 시설이나 기관에 피후견인을 맡기기;

(2) 피후견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피후견인의 신체적 건강의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 불임수술, 정신 외과 수술, 또는 신체 기관의 제거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동의하기;

(3) 구명 의료 절차의 보류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동의하기; 그러나 후견인은 구명 의료 절차가 사망 진행을 연장할 뿐이고 치료중인 질병이나 상태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치료하거나 완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구명 의료 절차의 중단 또는 보류에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후견인이 구명 의료 절차가 보류되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한 말입니다; 후견인은 중과실 또는 무모하거나 의도적인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이 단락에 따른 행위 또는 태만에 대한 민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4) 실험적 의료 절차를 수행하거나, 생명을 보존하거나 피후견인의 신체 건강의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아닌 의료 실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동의하기;

(5) 피후견인의 친권을 종료하는 것에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동의하기;

(6) 피후견인의 투표 등록이나 공공 선거에서의 투표를 금지하기;

(7) 피후견인의 운전면허 신청 및 취득을 금지하기;

(8) 피후견인의 결혼이나 이혼을 금지하기.

법령에 있는 권한과 의무에 추가하여, 후견인은 다음을 해야만 합니다:

1. 법원의 모든 새로운 후견인에 대한 교육 1 시간 요건을 충족시키는 교육 확인서를 제출.
2. 임명 후 90 일 이내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후견인의 책무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그리고 자산의 기준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3. 매년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후견인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
 - a. 검은 색 또는 파란색 잉크를 사용하여 단면으로 제출하거나 다음 웹사이트에 채울 수 있는 PDF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courts.alaska.gov>
 - b. 빈칸 없이 완전히 채워야 합니다. 통역사 도움이 필요하면 ASAGA 에 문의하십시오.

- c. 회계자료는 정확해야 하고, 추정치 또는 반올림된 수치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 d. 은행 거래 내역서를 포함하여,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e.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여러 재원을 섞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4. 법원 명령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당신의 권한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PG 190 (재검토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인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ASAGA 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07-444-4015 로 전화를 하거나, asagaak@gci.net 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 사이트 www.asaga.info 를 통해 등록해서 약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 후견인 및 옹호 협회

PO Box 220429, Anchorage, AK 99522

